

부산고등법원 2020. 10. 28 선고 2019나58882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부산고등법원 2020. 10. 28 선고 2019나58882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19. 11. 27 선고 2019가합43050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여진

피고, 피항소인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천동진

변론 종결2020. 10. 7.

판결 선고2020. 10. 28.

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19. 11. 27. 선고 2019가합43050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40,403,046원 및 그중 182,635,3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, 57,767,746원에 대하여는 2019. 3. 27.부터 각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17행부터 7쪽 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【고쳐 쓰는 부분】

『나.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

1) 갑 제16, 17, 18, 21, 25호증의 각 기재(각 가지번호 포함)에 의하면, 이 사건 공사의 원사업자 부산광역시 동구가 2018. 4. 25.경 원고에게 위 공사 현장의 경계석 및 블록파손에 대하여 재시공을 요청하였고,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에 따라 경계석 하자보수를 완료한 사실, 부산광역시 동구는 2018. 7. 11. 원고에게 위 공사의 다짐불량으로 인한 블록파손 등 부등침하 발생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구한 사실, 이에 위 공사의 공동수급인 원고와 주식회사 C이 하자보수를 한 사실, 원고가 하자보수비용으로 57,767,746원을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.

2)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사정, 즉 ① 이 사건

공사도급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된 2017. 7. 31.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, ②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2017. 7. 31.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나서야 하자 문제가 제기된 점, ③ 피고가 원고와의 협의에 따라 경계석에 관한 하자보수를 해주기는 하였으나, 그러한

사정만으로 위 공사의 다짐불량 등의 하자에 관한 책임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, 원고 역시 2018. 7. 11. 부산광역시 동구로부터 하자보수를 요청받고 더 이상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지 않은 채 원고가 하자보수를 이행한 점, ④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기까지 토목공사의 상당 부분을 이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,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된 2017. 7. 31. 이전에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서 피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다짐불량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볼 명백한 자료가 없는 점, ⑤ 설령 피고가 2017. 7. 31. 이전에 수행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은 점, ⑥ 원고가 주장하는 블록파손 등의 부등침하하는 공사 이후의 사용과정에서 발생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서 피고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.』

2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다.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김문관

판사박선영

판사손주희